

2023년 1/4분기 노·사 협의회 의결사항

일 시	2023. 05. 25.(수) 15:00	장 소	4층 회의실
참석자	병원측 위원 : 조준필, 강만식, 김순이, 서문경아, 최철호(간사) 노조측 위원 : 이현주, 이춘성, 권동혁, 배은정, 심예람		
논의 안건		의결 사항	
1.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요구 건	-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에 따른 야간 간호료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노·사 재검토 후 추후 논의한다.		
2. 준경력 호봉 미 적용자에 대한 재확정 요구 건	- 준경력 호봉 미적용자에 대한 재확정과 관련하여 재검토 후 2023년 2분기 노·사협의회 시 논의 한다.		
3.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건	-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노·사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한다. -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프로토콜(상담원 신청, 절차 등) 공유를 위해 보완 후 직원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한다. - 직원들 간 존칭과 존대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·사가 공동 노력한다.		
4. 기타 부서 현안 및 미이행 사항 조치 건			
1) 교대 근무자 현월 휴가 건	- 현월 휴가 시 교대 근무자도 반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도록 교대근무 부서별 공지하도록 한다.		
2) 주임기사 제도 운영 건	- 조직 진단 결과와 연동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		
3) 점심 시간 준용 건	- 직원들이 점심 시간을 준용하여, 근무 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.		

2023년 2/4분기 노·사 협의회 의결사항

일 시	2023. 06. 28.(수) 10:00	장 소	4층 회의실
참석자	병원측 위원 : 조준필, 강만식, 김순이, 서문경아, 최철호(간사) 노조측 위원 : 이현주, 이춘성, 권동혁, 유인균, 배은정		
논의 안건		의결 사항	
1. 정규직 정원 적용중인 공무원 2인(의무기록사1, 일반직1)의 정규직 전환 추진 건		-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	
2. 부서별 업무 매뉴얼 비치 및 사무인계인수 지침 마련 건		- 부서별 업무매뉴얼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.	
3. 부서 현안			
- 교대근무자 근무표 공지 건		- 교대근무자 근무표가 최소 10일 전에 공지하는 것을 이행한다. 단,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	
4. 미 이행 사항 조치 건			
- 군 경력 호봉 미적용자에 대한 재확정 요구 건		- 병원측 : 기존 입장 변화 없음. - 노조측 : 제3의 기관에 진정서 제출 입장 표명.	
- 야간근무자 특별수당 건		- 야근근무자 특별수당 관련 노조측 좀 더 검토 한다.	

2023년 3/4분기 노·사 협의회 의결사항

일 시	2023. 09. 14.(수) 10:00	장 소	4층 회의실
참석자	병원측 위원 : 조준필, 권혁면, 김순이, 서문경아, 남성호(간사) 노조측 위원 : 이현주, 권동혁, 김래형, 배은정		
논의 안건		의결 사항	
1. 교대근무 처우개선 (야간간호 수당 신설 건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신설한다. - 지급 대상자는 23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(간호사 8급 1호봉, 2호봉, 3호봉 / 월 40만원)와 22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(간호사 / n분의1)의 3교대 근무자로 한다. - 지급일은 3월, 6월, 9월, 12월로 한다. - 지급방법에 따른 세부사항은 야간간호료 수익금 운영 지침에 따른다. - 적용시기는 23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. 	
2. 근무복 개선 요청 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원 근무복 관련 상향 평준화와 부서별 근무복이 통일 될 수 있도록 2024년 근무복 구입계획 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 	
3. 부서 현안 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례식장(장례지도사, 조리원) 근무시간 점검 및 조정 관련 실무논의하기로 한다. 	

2023년 4/4분기 노·사 협의회 의결사항

일 시	2023. 12. 20.(수) 10:30	장 소	4층 회의실
참석자	병원측 위원 : 조준필, 권혁면, 김순이, 서문경아, 남성호(간사) 노조측 위원 : 이현주, 권동혁, 김래형, 이인, 배은정(간사)		
논의 안건		의결 사항	
1. 복지포인트 지침 개정 건		-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 개정(시행 24.01.01.) · 맞춤형 복지제도 근거 “개정” ▣ 보수규정2 제37조(복지포인트) “추가” ·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간 “삭제” ▣ 운영기간 : 2019.1.1. ~ 2023.12.31.(5년) “삭제” ·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여부(적용제외자) “개정” ▣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1일 근무시간이 8시간(주40시간)미만인 사람 “삭제” · 복지포인트 부여 “개정” ▣ 연 부여 기준: 개인별 900P 지급한다. 단,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복지포인트 부여액을 지급한다. “개정”	